

■ 법률 칼럼

비영리 사업 운영 시 유의사항

우리가 흔히 NGO 혹은 비정부기관이라 일컫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의 대부분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선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지향하는, 한마디로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조직들이다. 자선이나 구호단체, 재단이나 사단법인, 국제연합, 사회나 환경운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민간단체, 보건 의료 및 문화를 위한 복지기구나 주민자치, 교육기관, 교회, 각종 연맹 등이 '비영리'로 분리되고는 하는데, 통상적으로 권력이나 소유주의 자본적 이익보다는 공익을 목표로 한다. 물론 특정 비영리사업체가 과연 얼마만큼이나 공공성과 사회성을 기본으로 경영을 유지하는가는 별개의 주관적인 문제이지만 말이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설립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 영리법인보다 조금 더 복잡하는데, 이는 사업의 고유 목적이 이윤 창출이 아니라고 인정받는 경우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의무를 면제받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경우, 비영리사업체의 이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는 면세자격(Tax Exempt Status)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설립 시 해당 주정부와 연방정부 각각의 허가를 통해 주어지는 면세 자격은 국세청(IRS)의 관여로 유지된다. 국세청은 기부금 세금공제 대상을 세무보고 공시양식(연례보고서 Form 990)으로 취합하는데, 비영리의 사명과 수입의 출처를 비롯한 전반적인 재정 사항과 사업 정보를 매년 검토하여 면세자격 적합성의 유무나 박탈 여부를 평가한다. 보통 교회나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영리단체는 Form 990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Form 990과 같은 공시양식은 국세청 측에서 면세 자격 감사를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비영리사업체에 대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되는 기록이기 때문에 해당 단체나 법인의 평판이나 명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면세 자격이 주어진 사업체들의 결산 내역이 매년 어떠한 형태로 쓰였는지 확실히 함으로서 비영리사업 공정성의 유지와

투명성의 강화는 물론 기부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모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각종 지출 내역을 포함한 재무제표 이외에 공개되는 내용에는 비영리 사업체에서 임직원을 맡고 있는 주요 간부 직원들의 보상과 급여 사항을 비롯하여 임직원 간의 관계나 이해상충 규정 보유 여부, 정권 변경 여부에 관련된 이사회 세부사항 등이 있다.

사실 비영리 조세공제라는 일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비례하는 수고와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비영리사업을 하게 되면, 그 규모가 커질수록, 국가로부터 한층 더 세세한 관심과 준법감시를 받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Form 990 이외에도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 영리법인보다 행정처리가 상대적으로 더 복잡해질 수 있는 동시에, Form 990같은 연례보고서의 경우 비용 발생은 물론, 상당히 많은 보충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그러다 보니 자칫 정말 좋은 취지로 비영리사업을 하다가도 행정처리에 미숙하여 면세 혜택은커녕 벌금 등의 처벌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

비영리조직들은 그 성격에 따라 세법상 여러 형태로 분리되는데, 단순히 연방소득세 부과에 대한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며 얼마만큼의 세법상 우대 조치를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특정 단체가 로비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가에서 어떠한 제한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501(c)(3)으로 분류된 비영리 종교나 자선, 교육기관과 같은 비영리사업체들의 경우, 상공회의소 등을 포함하는 501(c)(6)조항의 경제 관련 단체들과 달리 그 어떤 로비나 정치 캠페인에 참여할 수 없다.

이지연 변호사
(Jeeny J. Lee, Esq.)
J.L. Bridge Legal Consulting 대표변호사
info@jlbridge.com
www.jlbridge.com
(949) 535-5275



■ 건강 칼럼

질병은 예방하는 것이 최고 '바이오마커'

건강은 타고난 복일까? 아니면 올바른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지켜낼 수 있는 것일까?

현대인들은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섭취한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암이나 질병을 피하지 못하는 이웃을 보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생각하게 된다.

지난 여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업무상 찾아온 암 전문 교수님으로부터 통계상 담배를 피우는 남자보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가정주부가 더 폐암에 많이 걸려 암병동을 찾는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렇다면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진 담배보다 더 해로운 것은 무엇일까? 폐암에 걸린 가정주부는 어떠한 환경에 노출되었기에 암에 걸렸을까? 스트레스, 24시간 노동, 육아, 요리, 청소에서 오는 피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오늘은 현대 생활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독소와 영양 결핍에 대해서 살펴본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독소에 노출되어 있다. 오염된 물, 여러 가지 화학 물질로 정제된 물, 화학비료로 재배된 과일과 채소, 과자나 아이스크림에 첨가된 인공 첨가물, 방부제가 첨가된 화장품이나 샴푸, 청소나 빨래에 사용되는 화학 세제 등 우리가 접하는 화학 물질이 100가지가 넘고 우리 몸속에 쌓여있는 독소만 200가지가 넘는다.

게다가 과거에는 음식이 부족했지언정 음식에 들어 있는 천연의 영양소 섭취만으로도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었지만, 인공 감미료나 색소, 방부제, 화학비료 등에 노출되고 첨가된 음식을 섭취하는 현대인들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어도 영양 결핍이 될 수 있다.

현대사회가 지나치게 복잡화, 다양화, 기능화함에 따라 나타난 각종 정신병, 공해병, 직업병, 성인병의 원인이 바로 이러한 독소와 영양결핍, 스트레스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건강의 척도로서 바이오마커(생체지표)가 사용된다. 바이오마커란 발암, 유전 질환, 노화 등이 진행되는 단계 중 특징적

로 나타나는 형태학적, 생화학적, 분자생물학적 변화로 생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BMI(Body Mass Index)라고 불리는 신체질량지수, 혈압, 맥박, 체온, DNA(유전자), 혈액, 소변, 타액 등이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바이오마커이다. 바이오마커로 우리 몸의 독소, 영양의 과잉 또는 결핍 상태, 스트레스, 유전적으로 취약한 병까지 알 수 있다.

바이오마커가 정상적인 수치에 해당하고, 바이오마커를 통해 다가올 질병이나 증상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식습관과 생활을 하며 운동을 지속할 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단지 발견된 병이 없거나 아픈 곳이 없는 상태라고 해서 건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질병은 갑자기 걸리는 것이 아니다. 서서히 지속적으로 독소에 노출되고 신체에 필요한 요소가 결핍되어 우리 몸의 면역시스템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거나 인체의 세포가 돌연변이 되면 질병이 생긴다.

병은 예방이 최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병에 걸리면 건강한 몸으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바이오마커를 검사하여 자신이 당뇨, 혈압, 암, 치매, 중풍 등의 다양한 질병 가운데 어떤 병에 더 취약한지 미리 알고, 그를 예방하는 식습관과 생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i-Fragility Health Clinic>(이하 AFH 클리닉)에서는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수백 가지의 바이오마커를 검사하고 분석함으로써 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와 환경, 유전적 취약점을 이해하고, 개개인의 신체 요구에 맞춘 각각의 생활 양식과 치료를 제공한다. 건강한 개개인이 모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함께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고 동역자가 되는 것이 <AFH 클리닉>의 목표이자 비전이다.

Dr. Sung Hye Yi
President & COO
Anti-Fragility Health
www.anti-fragilityhealth.com
TEL (714) 864-3730
1020 S. Anaheim Blvd, #101
Anaheim, CA 92805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연체세금 해결

- 법인설립
- 세무감사대행

- 해외자산보고
- 상속, 증여세금보고

방문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